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**출입국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**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웅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,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(D-8) 및 영주(F-5)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

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'전자비자센터'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3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등록하였을 것”을 “등록하였을 것(다만,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(다만,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)

제1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96조제1항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7조제1항, 제9조”로 한다.

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(D-8)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학사(국내대학 전문학사를 포함한다)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

별표 1 제28호의3 영주(F-5)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기업투자(D-8)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「외국인

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.	제1조의2(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<u>등록하였을 것</u>	2. ----- ----- ----- <u>등록하였을 것(다만,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)</u>
3. <u>법 제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</u>	3. <u>법 제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(다만,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)</u>

가.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<u>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</u>	<삭 제>
나.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<u>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</u>	<삭 제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6조(권한의 위임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별 제9조, 제11조, 제20조, 제21조,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5조의2, 제25조의3, 제30조제1항, 제89조,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.	제96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7조제1항, 제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외국인정책과	
연 락 처	02-2110-4116